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1.

발 의 자 : 이재강 · 최혁진 · 박해철
윤후덕 · 염태영 · 박선원
김문수 · 김우영 · 김준형
김병주 · 박지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,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, 국방부,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,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.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6조의2에

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(안 제2조제2항제 10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10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(생 략)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·처·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,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「 <u>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</u> 」 제6조의 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 <u>청</u>
③ ~ ⑩ (생 략)	③ ~ ⑩ (현행과 같음)